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5. 29.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홍 승 령	전 화	044-202-3575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윤 민 수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과 장	노 혜 원	전 화	044-200-2293
기획총괄팀	담 당 자	이 승 훈		044-200-2295
산업통상자원부	과 장	김 호 성	전 화	044-203-4380
유통물류과	담 당 자	조 은 형		044-203-4381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정 영 기	전 화	044-202-3595
보상지원팀	담 당 자	류 재 현		044-202-359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팀 장	이 병 철	전 화	044-205-6511
격리지원반	담 당 자	전 종 형		044-205-65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 지급 등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概算給) 지급 등을 논의 하였다.
-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물류센터 사업장 등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감염 확산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하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학교 내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교 전 유증상자 검사 등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교육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지시하였다.

### 1 유통기업 물류센터 방역 현황 및 조치 계획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온라인 유통기업이 운영하는 물류 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유통물류 센터 방역 현황 및 문제점, 현재까지의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역 관리 강화 계획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 배포, △유통매장 등 현장 점검, △업무지속계획(BCP) 표준문안 배포 등의 감염병 예방·관리 조치를 시행하여 왔다.
  - 이번 유통물류센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는 5월 28(목) 유통물류센터 3개소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으며,
  - 6월 1일(월)까지 현재 폐쇄된 3개소를 제외한 32개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전수 점검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 합동 점검 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비롯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방역·모니터링 책임자 지정,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전수 점검 결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보완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해 유통물류센터 환경에 맞는 방역 강화방안을 지속 시행한다.
-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질병관리본부 등)는 유통물류센터를 비롯한 물류시설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물류시설 세부 방역 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배포하고,
-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업계 의견 및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부 방역 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통물류센터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와 함께 정규·일용직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 감염병전담병원 손실보상 2차 개산급(槪算給) 지급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5.28.)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66개 대상**으로 **약 1,308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차관,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











- 손실보상 개산급은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 코로나19 대응 초기부터 병상확보 및 환자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1차로 146개 기관에 대해 총 1,020억 원의 개산급을 지급하였다.
- 또한 6월 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개산급**을 **5월 중 앞당겨 지급**하기로 하였다.
- □ 이번 2차 개산급은 감염병전담병원 대상으로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시로 병상을 확보하였으나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 코로나19 화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지급한다.
  - 지난 **1차 개산급(4.9.)**의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 조치에 따라 병상을 확보하였거나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 손실분(~3.26. 발생분)'에 대해 우선 지급하였다.
    - 2차 개산급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의 미사용 병상 손실뿐만 아니라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5.15. 발생분)'까지 확대 지급한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이 1차 개산급(약 7억 원)에 비해 평균 약 2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 < 참고: 1차·2차 개산급 비교 >

	1차 개산급 (4.9.)	2차 개산급 (5.29.)		
대상기관	병상확보지시를 받거나 폐쇄·업무정지된 병원급 의료기관	<u>감염병전담병원</u> (누적 74개소, 해제된 40개소 포함)		
지급대상	비워둔 <b>미사용 병상</b> 에서 발생한 손실	미사용병상 <u>+ 환자치료에 사용한</u>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지급대상 손실기간	조치 이행일~3.26.	조치 이행일~5.15.		
지급 규모	146개, 1,020억 원 (기관당 6.9억 원)	66개, 1,308억 원 (기관당 19.8억 원)		

-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감염병전담 병원 등의 손실에 대해 **매월 개산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폐쇄 또는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소 등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산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하며,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한 의료기관이 환자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워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5월 28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u>우리 의료기관은</u> 어떤 지원을 받는지 길라잡이로 확인하세요'참고











##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 5월 28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9,908개소, ▲이·미용업
    2,073개소 등 총 58,308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이격 거리 미 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679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울산시**는 학원·유흥시설·음식점을 **집중 점검**을 통해 이용자 마스크 착용에 관한 집중 홍보를 진행하였고,
    - 충청남도는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을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2개소, 노래연습장 11개소, 전통 시장 9개소. 실내체육시설 8개소 등 **총 63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비롯한 기본수칙 미준수 사례를 발견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7,881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202개반, 1,301명)으로 심야 시간 (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6,073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1,808개소 중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설 6개소를 적발하였고,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6,121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 중이며, 어제(5월 28일)까지 위반업소 73개소를 적발하여 58개소는 고발하였고, 13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과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8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16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44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723명이다.
    - 2,855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015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5월 28일)는 **무단이탈자 4명**이 애완견 진료와 치과 방문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은 **계도 조치**하고 나머지 **2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5명이며, 이 중 58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7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5개소 2,99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5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 (5월 28일) 입소 222명, 퇴소 14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72명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마스크 착용법
  -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 붙임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처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